

1. 건축물 지도점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 분야의 업무를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에게 대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건축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실화 추진
 - 건실화 점검 : 시 30%, 구 70%
 - 방문 및 전화 상담 시 친절하고 명확한 응대로 신뢰 향상
 -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건축사, 건축주)
- 위법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 세부 추진계획

- 정기점검 ⇒ 분기별 1회 실시 (점검대상 20 ~ 30%)
- 수시점검 ⇒ 필요시 점검계획에 의거 실시(검찰청 등 타 기관 합동점검 포함)
 - 위법건축물 사전예방
 - 건축사, 건축주 강력한 행정조치
- 민원인 방문 및 전화상담 시 담당주사 책임상담 및 응대

□ 문제점 및 대책

- 인구증가 및 택지개발 등으로 신축 건축물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건축지도원 부족
⇒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건축사 다수 배출로 인한 건축사간 과당 경쟁으로 건축주·시공자의 위법행위 묵인 우려
⇒ 위반 건축사 적발 시 고발 및 업무정지 등 병행 조치

2. 위법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위법건축물 적발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지양하고 자진시정 유도
-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로 준법정신 고취하고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

□ 추진개요

- 2003년 이행강제금 징수예정액 : 84,000천원 (2002 대비 38,000천원 증)
- 2002년 이행강제금 이월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 * 2002년 이월 체납액 : 2003. 2월 결정

□ 세부 추진계획

-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003. 3월 ~ 6월
 - 체납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회 실시 : 2003. 3월 ~ 5월
 - 체납자 최고장 송달 : 2003. 5월
 - 고액·고질 체납자 재산 및 자동차 압류조치 : 2003. 7월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2003. 7월 ~ 12월
 - 체납자 최고장 송달 : 2003. 8월 ~ 10월
 - 고액·고질 체납자 재산 및 자동차 압류 조치 : 2003. 11월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무재산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어려움
 - ⇒ 지속적인 재산추적
-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독촉장 발부 및 수시 방문 독려
- 전국 재산조회 후 체납자 재산 및 자동차 압류 조치

3. 대형건축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

- 아파트 및 대형건축공사장을 점검하여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
- 평상시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통한 『안전문화』 의식제고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03. 1. 1 ~ 12. 31 (연중)
- 대 상
 - 건축중인 공사장 아파트 4개소, 대형공사장 8개소
 - 1종, 2종 시설물 15개소

□ 세부 추진계획

- 대형건축공사장 (신규 착공신고분 포함)
 - 정기점검 : 해빙기, 우기, 동절기
 - 수시점검 : 필요시 점검계획 및 현지 출장 시
- 1종, 2종 시설물 : 15개소
 - 정기점검 : 년 2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 - 관리주체 점검
 - 정밀점검 : 사용승인 후 3년에 1회 이상 - 관리주체 점검
 - 확인점검 : 년 1회 이상 확인하여 상태평가 관리 - 구청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관계자의 안전불감증, 무리한 공기단축
 - ⇒ 점검을 통한 건실한 공사현장 관리

□ 기대효과

- 정기점검 등으로 예상되는 대형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치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
-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여 각종 재난사고 미연 방지

4.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자연친화적인 색채사용과 그래픽, 다양한 예술작품의 설치, 아파트 명칭에 옛 지명이나 순수 우리말을 사용토록 하여 밝고 아름다운 빛고을 예향도시로 가꾸고자 함

□ 추진개요

-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그래픽 설치 및 미술장식품 설치 유도
- 아파트 명칭표기 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역 고유명칭 또는 순수우리말 사용 유도
- 도심가로변 건축물 색채가이드를 적용 고유하고 특색 있는 색채를 사용토록 유도

□ 세부 추진계획

- 그래픽 시설 권장 :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 명칭 행정지도 : 고유지명 및 순수 우리말 사용
- 도심 가로변 색채가이드 적용 권장
 - 사업개요 : 주요 가로별로 신규 건축 시 고유하고 특색 있는 색채를 적용토록 시공을 유도하여 가로의 상징성 부여
 - 추진일정 : 계속 사업

□ 문제점 및 대책

- 건축공사 원가상승으로 사업자 설치 기피
- 법령근거 없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음
 - ⇒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시 적극 권장

□ 기대효과

- 친밀감 있고 아름다운 거주환경 및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건축물 및 가로별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5. 현장확인예약제 운영

현장 확인 처리 민원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방문할 때까지 민원인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이 방문 시간을 지정토록 하여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 개요

- 현장 확인을 요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이 언제 방문할지 몰라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담당공무원도 현장 방문시 민원인의 부재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업무 담당자가 민원인과 연락하여 현장방문을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 운영기간 : 연중 계속
- 대상민원 : 인·허가, 신고 등 현장방문이 필요한 민원
- 처리절차
 - 예약방법 :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업무담당자가 민원인과 연락하여 현장방문을 원하는 일자와 시간을 예약
 - 민원인 : 약속시간에 현장에 대기하여 필요한 설명과 시설 등을 제시

□ 기대 효과

- 민원인이 막연히 관계공무원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로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